

# 정 관

개정(14) : 2017. 7.19    개정 (8) : 2014. 7.14    개정(2) : 2005. 9.29    제 정 : 1996.12.17  
개정(15) : 2017. 9.27    개정 (9) : 2015.10.16    개정(3) : 2009. 2.27    개정(1) : 1997. 7.22  
개정(16) : 2019. 3. 7    개정(10) : 2016. 7.25    개정(4) : 2009. 7. 6    개정(2) : 1998. 7.31  
개정(17) : 2020. 5. 7    개정(11) : 2016.10.12    개정(5) : 2009.12.21    개정(3) : 1998.12.22  
개정(18) : 2023. 3.15    개정(12) : 2017. 3.24    개정(6) : 2010.12.13    제 정 : 2000. 2.25  
개정(13) : 2017. 7. 3    개정(7) : 2014. 3. 4    개정(1) : 2003. 3.27

##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법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각 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이외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본점·지점등)** 재단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460억원으로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자의 출연금

**제5조(정관의 변경)**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7. 9. 27 개정)

**제6조(공고의 방법)**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2015. 10. 16 개정)

## 제 2 장 임 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선임직이사 1인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이사로 할 수 있다.」(2020. 5. 7 개정)

③ 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의2(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15. 10. 16 신설)

**제9조(임원의 임명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1인(2017. 9. 27 개정)

2. 시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1인

3. <삭 제>(2016. 10. 12 개정)

3. 재보증계약기관장이 추천하는 소속임직원 1인

③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단, 노동자이사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임명한다.(2020. 5. 7 개정)

④ 감사는 중소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2005. 9. 29 개정)(2017. 9. 27 개정)

⑤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단, 제2항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 한다.(2019. 3. 7 신설)

**제9조의 2(이사장의 직무수행평가)** 이사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시에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장의 연임결정, 차기 연봉 또는 성과급에 반영할 수 있다.(2009. 2. 27 신설)

**제10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노동자이사는 그 임기중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이 종료된 때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2017. 3. 24 개정)(2019. 3. 7 개정)(2020. 5. 7 개정)

② 상근 이사 및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임기 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9. 3. 7 개정)

③ 부산광역시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2003. 3. 27 개정)

1. 법과 시행령 및 법과 시행령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 정관을 위반한 때(2015. 10. 16 개정)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014. 3. 4 신설)

**제10조의 2(임원의 연임)** ① 제9조의 2에 따라 연임하는 이사장은 공개모집 채용을 생략하고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부산광역시장의 연임 임명한다.(2017. 3. 24 신설)

② 비상임 임원(노동자이사제외) 연임 시에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연임 임명하며, 별도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2019. 3. 7 신설)(2020. 5. 7 개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 10. 16 개정)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3. 7 신설)
  8.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2015. 10. 16 신설)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자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2020. 5. 7 신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 ④ 노동자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2020. 5. 7 신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노동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12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년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 3 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9. 법령과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의결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서면결의)**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반여부를 얻어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기타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4 장 조직 및 직원

**제21조(조직)**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직, 정원, 임면,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7. 7. 19 개정)

**제22조(본부장)** <삭 제>(2017. 7. 19 개정)

**제23조(본부의 조직 등)** <삭 제>(2017. 7. 19 개정)

## 제 5 장 업 무

**제2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정책자금 융자대상업체 평가 및 추천(2017. 07. 03 신설)
7.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창업과 경영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2017. 07. 03 신설)
8. 제2호 및 제3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2009. 12. 21 개정)(2017. 9. 27 개정)
9.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2017. 07. 03 개정)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2009. 12. 21 개정)(2017. 9. 27 개정)
11.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09. 12. 21 개정)

**제25조(업무방법서)** 재단의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기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7. 9. 27 개정)

**제26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한다.

② 재단이 동일한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8억원으로 한다. 다만, 시가 운영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으로 최고한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2009. 2. 27 개정)(2023. 3. 15 개정)

**제27조(재보증)** 재단은 제24조 제2호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그 신용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보증재원을 지원하는 금융소의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부산광역시가 별도의 보증재원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 7. 6 개정)(2016. 7. 25 개정)

**제28조(업무협조)** 재단은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2009. 2. 27 개정)

**제29조(업무의 위임등)** ① 재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단업무의 일부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다.(2009. 2. 27 개정)

② 재단이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09. 12. 2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에 갈음하여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09. 12. 21 개정)

## 제 6 장 회 계

**제30조(회계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업계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4. 7. 14 개정)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제31조(회계년도)** 재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업무계획)**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27 개정)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27 개정)

**제33조(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 7. 14 개정)

**제34조(이익금의 처리)** 재단의 결산순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월이익금으로 유보

**제35조(기본재산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2009. 12. 21 개정)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2003. 3. 27 개정)
3.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2003. 3. 27 신설)
4. <삭 제>(2009. 12. 21 개정)

**제36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손실금은 이월이익금으로 보전하고 그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전 신청한다.

## 제 7 장 해 산

**제38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이사회의 결의

② 재단이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7. 9. 27 개정)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시장을 경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2017. 9. 27 개정)
- ② 법 부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 ③ 법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재단이 승계하며 임원의 임기는 조합임원으로서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법 시행당시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출연금 등은 재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 ⑤ 기존 조합의 규정(요령, 기준등 포함)은 재단의 규정으로 본다.
- ⑥ 재단의 첫 회계연도는 2000년 3월 1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⑦ 재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설립일에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2009. 2. 27 개정)

위 부산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0년 2월 25일

## 부산신용보증재단 설립 발기인

발기인 대표 (재)부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김 정 규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장	백 운 현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장	박 양 우
부산은행 여신기획부장	유 진 덕
기술보증기금영남지역본부장	박 영 식
부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윤 중 걸
이원회계사무소 대표 회계사	류 환 열

## 부 칙(1)

이 정관은 200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

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3)

이 정관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4)

이 정관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09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 이 정관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 이 정관은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 이 정관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 이 정관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 이 정관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 이 정관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 이 정관은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일(2017. 7. 26)로부터 시행한다.(개정일 : 2017. 9. 27) 부 칙(15)
- 이 정관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 이 정관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 이 정관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